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혁신도시관리본부 한시정원(3급, 1명) 존속기한 연장
 - 2014년 6월 30일까지 → 2015년 6월 30일까지(1년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